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4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박 정·어기구·강유정

이기헌 · 송옥주 · 김정호

김병기 · 김현정 · 민병덕

문금주 · 김남근 · 소병훈

정준호 · 이재관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 중 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 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 한파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안 및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하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고자 하고, 또 근로자의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5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고열·한랭·다습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고열·한랭·다습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2조의2(산업재해 발생 신고 등)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목격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먼저 신고할 수 있다.
 - ③ 관리감독자등은 근로자의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받 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작업장 주소지 관할 소방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휴대전화 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 사업주는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소방관서의 장은 비상벨 설치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6조의2 전단 중 "제51조부터"를 "제41조의2, 제51조부터"로 한다. 제17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41조의2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17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비상벨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42조제1항"을 "제41조의2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1조의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고열·한랭·다습
	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
	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열・한랭・다습
	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
	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
	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
	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
	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
	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신 설>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관련 비용 전부 또는 일부</u> 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의2(산업재해 발생 신고 등)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등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 해를 목격한 근로자는 산업재 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명·신 체상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 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먼 저 신고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근로자의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 도록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작업장 주소지 관 할 소방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에 휴대전화 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한 사업주는 비상벨을 설 치하여야 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하 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소방관서의 장은 비상벨 설치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의 요청에 협조하 여야 한다.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 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 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 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 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 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 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2. ~ 8.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생 략)

<u>제41조의2, 제51조부터</u>
제170조(벌칙)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1조의2제3항(제166조
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 8.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 2. (생략)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 · 제5항 · 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 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 · 제3항 · 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

2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신
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비상벨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3 <u>제41</u> 조의2제2항(제
3. 제41조의2제2항(제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3 <u>제41</u> 조의2제2항(제
3. 제41조의2제2항(제 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	
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